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審査報告書

1994. 6. 17.
行政財務委員會

1.審査經過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1994年 6月 3日 區廳長提出

나. 回附日字：1994年 6月 7日 回附

다. 上程日字：第25回 永登浦區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1994年 6月 15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朴忠會)

가. 提案理由

지방세 비과세 대상중 지방세를 비과세 받고자 할 때는 비과세 증명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리하여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조례 제6조중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 제4항중 "15일"을 "14일"로 하며 제15조, 제17조, 제29조 제2항, 제33조 본문에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1항 본문에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1항 본문에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 신설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趙大顯)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총10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10개 조문중 1개 조문인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의 단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나머지 9개조문의 11개 조항의 내용에 단서 규정을 추가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구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5

제 출 년 월 일：1994년 월 일
제 출 자：영등포구청장

1. 제 안 이 유

지방세 비과세 대상중 지방세를 비과세 받고자 할 때는 비과세 증명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리하여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제6조중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 제4항중 "15일"을 "14일"로 하며 제15조, 제17조 제29조 제2항, 제33조 본문에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1항 본문에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 신설.

3. 관 련 법 규

지방세법 제184조, 제184조의 2, 제184조의 3
○법 제234조의 12－14, 제245조의 2

4. 예 산 조 치

별도 예산 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7조 제4항중 "15일"을 "14일"로 한다.

제15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17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23조 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32조 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조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한다.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 …… …… …… …… …… (삭 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거 사무의 위임은 조례로서 하여야 하므로 내부위임규정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제7조(납부기한 연장) ①－③(생략)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기한 연장) ①－③(현행과 같음) ④ …… …… …… 14 일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상의 처리기한이 14일로 되어 있는바, 조례의 처리기한을 14일로 통일시킴.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3.(생략)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 …… …… …… ……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1.－3.(현행과 같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해소.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 …… …… …… ……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해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단서 신설) 1.－7.(생략)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1.－7.(현행과 같음)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 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 …… …… …… …… …… 다만, 서울특별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현행과 같음) ② …… …… …… …… …… ……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각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 신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각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신고에 다른 납세자 불편이 있으므로 취득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제24조(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5.(생략)	제24조(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 …… …… …… …… …… …… 다만, 서울특별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현행과 같음)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각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신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제25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제25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 ……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각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불편이 있으므로 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5.(생략)	…… …… …… …… ……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현행과 같음)	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신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5.(생략)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위 신고의무)…… …… …… …… …… …… …… …… ……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현행과 같음)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각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있으므로 취득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 신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3.(생략)	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 …… …… …… …… ……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현행과 같음)	취득세와 종토세에서 각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신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② 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② …… …… …… …… …… ……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 해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32조(신고의무) ①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6.(생략)	제32조(신고의무) ①(현행과 같음) ② …… …… …… ……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현행과 같음)	취득세와 사업소에서 각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불편이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서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상신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제33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자에게 납기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6.(생략)	제3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 …… …… …… …… ……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1.－6.(현행과 같음)	